

의안번호	2207189
의 퇴 인	김성원의원
회 답 일	2025.2.19.
추계번호	24D648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의4 (상의등급의 구분과 판정)	현행 상이등급(1~7급)에 8급을 신설하려는 것임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조의4 (상의등급의 구분과 판정)	현행 상이등급(1~7급)에 8급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1~7급으로 구분된 현행 상이등급에 8급을 신설하여 경미한 부상자도 국가유공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상이등급 체계가 개편되는 경우 보상금·취업지원·교육지원·대부지원·의료지원·국립묘지 안장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전투,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은 그 정도에 따라 1~7급의 상이등급을 받고 국가유공자(전상군경, 공상군경)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인원: 2024년 기준, 총 105,119명(1급1항 182명, 7급 39,255명 등)
 - 지원: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기타지원(양로·양육·보훈요양원·수송시설 감면이용 등), 국립묘지 안장

[표 1] 국가유공자(전상군경, 공상군경) 현황: 2020~2024년

(단위: 명)

		2020	2021	2022	2023	2024
1급	1항	218	211	203	193	182
	2항	610	578	541	520	489
	3항	415	400	375	350	330
2급		1,108	1,037	957	901	860
3급		5,898	5,732	5,436	5,196	5,237
4급		1,820	1,733	1,646	1,569	1,507
5급		10,528	10,107	9,623	9,335	9,126
6급	1항	9,592	9,917	10,093	10,445	10,805
	2항	34,278	34,215	33,849	33,642	34,317
	3항	1,816	2,012	2,093	2,234	3,011
7급		43,429	42,543	41,485	40,628	39,255
합계		109,712	108,485	106,301	105,013	105,119

자료: 국가보훈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국가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군경 또는 일반공무원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 준용¹⁾하는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체계에 따라 일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인원: 2024년 기준, 총 6,290명
 - 지원: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기타지원(양로·양육·수송시설 감면이용 등)
- 한편,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신체 상이의 정도가 상이등급(1~7급)의 인정기준에 미달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인원은 다음과 같음
 - 인원: 2024년 기준, 총 68,159명(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신체검사)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등급 판정의 효력 및 상이의 추가인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2] 상이등급 인정기준 미달자 현황(누적): 2022~2024년

(단위: 명)

	2022	2023	2024
등급미달자	65,800	67,012	68,159

자료: 국가보훈부

[표 3] 상이등급 인정기준 미달 판정자 현황(연도별): 2022~2024년

(단위: 명)

	2022	2023	2024	합계	평균
전상군경(고엽제 포함)	1,719	1,896	2,953	6,568	2,189
공상군경	585	546	455	1,586	529
재해부상군경	2,139	1,867	1,272	5,278	1,759
기타(재해부상공무원 포함)	21	36	15	72	24
합계	4,464	4,345	4,695	13,504	4,501

주: 상기 인원은 [표 2]의 상이등급 인정기준 미달자가 재신청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

자료: 국가보훈부

-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상이등급의 요건에 미달한 사람을 8급 상이자로 인정하여 일정한 지원을 하려는 것인데, 그 부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상이등급(8급)의 인정요건에 해당하는지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음
- 따라서 현시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상이등급(8급)의 인정요건”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assembly.go.kr